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49
----------	-----------

제안일자 : 2023. 02. 27.

제안자 : 주택공간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11조의2제1항의 자구를 정리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안 제1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제11조에 따른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는 상호
협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매년 공동사업 운영·
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시장 등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사회적 경제 주
체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의2제1항 중 “시장 등은 매년 공동사업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한다. 사회적 경제 주체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를 “시장 등은 매년 공동사업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시장 등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사회적 경제 주체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11조의2(공동사업 평가 등) ① 제11조에 따른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는 상호 협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u>시장은 매년 사회주택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한다.</u> <후단 신설></p>	<p>제11조의2(공동사업 평가 등) ① ----- ----- ----- ----- <u>시장</u> ----- ----- <u>매년 공동사업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한다. 사회적 경제 주체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u></p>	<p>제11조의2(공동사업 평가 등) ① ----- ----- ----- ----- ----- -- <u>평가하고, 시장 등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사회적 경제 주체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u></p>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시장은 매년 사회주택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한다.”를 “시장 등은 매년 공동사업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시장 등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사회적 경제 주체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시장”을 “시장 등”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사회주택 사업자를 대표하는 자
3. 사회주택 입주자를 대표하는 자
4.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주거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5. 그 밖에 주거관련 비영리사업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적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의2(공동사업 평가 등) ① 제11조에 따른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는 상호 협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u>시장은 매년 사회주택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한다.</u></p> <p>②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u></p> <p>③ <u>시장은 우수한 평가를 받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해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u></p> <p>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u>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u>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u></p>	<p>제11조의2(공동사업 평가 등) ① ----- ----- ----- ----- <u>시장 등은 매년 공동사업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시장 등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사회적 경제 주체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u></p> <p>② <u>시장 등</u>----- ----- ----- -----.</p> <p>③ <u>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u></p> <p>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u>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u></p> <p>② <u>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u></p>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주택·사회적 경제 관련 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소관 본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2. 사회주택 사업자를 대표하는 자

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사회주택 사업자를 대표하는 자
3. 사회주택 입주자를 대표하는 자
4.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주거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5. 그 밖에 주거관련 비영리사업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삭 제>

<삭 제>

<삭 제>

3. 사회주택 입주자를 대표하는 자

4.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주거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5. 그 밖에 주거관련 비영리사업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⑥ (생략)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삭 제>

제2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

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위촉위원 -----

-----.